< 요 약 정 보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9.05.19)

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

[펀드코드 : CK598]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주가지수인 "KOSPI200지수" 수익률을 추적하고 퀀트전략, 옵션전략, 차익거래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추가수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BNK자산운용 (주) (02-6910-11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19년 05월 23일 /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C**	**C-e**	**S**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제한없음	온라인 전용	제한없음	온라인 전용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펀드온라인코리아 전용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내	납입금액의 0.50% 이내	-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200**	**0.100**	**0.800**	**0.400**	**0.095**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 0.123, 신탁업자 :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 : 0.012**				
	기타비용	0.001	0.001	0.001	0.001	0.001
	총보수·비용	**0.351**	**0.251**	**0.951**	**0.551**	**0.246**
※ 주석사항		주1)생략된 종류[Class C-F, C-I, C-W, C-P, C-Pe, C-P2e, A-G, C-G, S-P] 및 기타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 주2)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 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 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3)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이 투자신탁은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이므로 발생할 수 있는 기타비용 등은 당사에서 유사한 전략의 다른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비용 등은 상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7)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5시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대금 지급
	15시30분 경과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30분 경과후 : 3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대금 지급
기준 가격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 · 게시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그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비교지수 주1) : KOSPI200 X 100%

주1)KOSPI200 :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거래 대상으로 1994년 개발한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200종목으로 구성(지수정보 : 한국거래소, www.krx.co.kr)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포트폴리오와 주가지수선물/옵션 등에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인 KOSPI200지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종합니다. 또한, 퀀트전략, 옵션전략, 차익거래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 KOSPI200지수를 추종하기 위하여, 주식포트폴리오, 주가시주선물/옵션 및 ETF 등에 투자하여, 추적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초과수익 전략]

· 퀀트전략 : 퀀트모델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초과수익 추구
· 롱숏전략 : 두 종목간 상대적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

· 차익거래 전략 : 상대적 고평가 자산을 매도하고 상대적 저평가 자산을 매수하여 초과수익 추구
· 옵션전략 : 다양한 옵션전략을 활용하여 초과수익 추구
· Event Driven 및 공모주 전략 : 인수합병(M&A), 대량매매(Block Deal), 공모주 투자 등의 이벤트 매매를 통한 초과수익 추구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방안]
· 추적오차 손실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도달 시 리벨런싱 실시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 펀드 전체 및 전략별 손익 모니터링을 통해 손익의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강구
· 추적오차 연 6% 이내 목표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200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는 주식파생형 투자신탁으로서, KOSPI200지수의 수익률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2019.05.19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
오준완	1970	**책임운용**(Passive운용본부장)	-	-
배성영	1989	부책임운용(Passive운용사원)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오준완 0개, 0억 / 배성영: 0개, 0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Passive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어 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서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동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대부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주식과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 등급분류는 BNK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추적하는 비교지수와의 추적오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시 포트폴리오 재조정 실시
- 실시간 추적오차 모니터링 및 손익분석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C-Pe 및 S-P 가입자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2014.01.0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다만, 종합소득금액 4 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 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수령 사유	부양가족(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및 C-P2e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2015.01.0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 다만, 종합소득금액 4 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 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 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 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 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 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종류(C-P,C-P2,C-Pe,C-P2e, S-P)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사본 등 열람장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이 간이투자설명서의 증권신고서는 2019년 05월 23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